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처음 안전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정기 안전점검비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 각각에 적용되는 안전점검에 관한 안전보건관리비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리오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접수번호 : 10726993]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동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건설기술법상의 안전점검 및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은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정성 및 전기사용에 따른 적정여부 등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본사 사옥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직원이 현장의 실무교육(OJT)을 받고자 하여 왔을 경우 법적안전교육(시간)은 어떤 항목(안전보건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교육 등)에 적용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 OJT 기간(1일 ~ 1개월)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접수번호 : 10705989]

Answer

1. OJT(On the Job Training)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며, 집합교육(Off the Job Training)과는 대별되는 개념의 교육으로써, 일반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 앞으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직장내 선배나 숙련자로 하여금 Man-To-Man형식으로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받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OJT의 개념이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개념의 교육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에게 본사에서 현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제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들을 경험삼아 해보도록 하는 것인지 부터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만일 이번 교육이 전자에 속하고, 이미 신규채용자교육을 받았더라면 작업내용 변경교육이 필요없을 것이나, 후자에 속한다면, 신규채용자교육을 받았더라도 작업변경시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OJT”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일한다면, 그 기간과는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저는 상시 근로자 150여명이 근무하는 고속철도 정비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생을 전공하였으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겸임할수 있는지요? 또한 겸직이 가능하다면 현재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신고는 되어있는데 보건관리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나 양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 10717916]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2항에 근로자를 30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의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귀하가 소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고, 위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보건관리자의 겸임 업무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보건관리자선임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서식으로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할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공정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명확한 작업공정의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접수번호 : 10698946]

Answer

1.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3가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작업공정별로 보호구를 착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위와 같이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